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9.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8월 29일

나. 발 의 자 : 김재진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9.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재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도”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제설·제빙에 관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순위를 정함(안 제3조)
-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정함(안 제5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을 정함(안 제6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도구의 비치·관리 및 자재나 도구의 지원근거를 정함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 등의 제설·제빙에 관한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3조에서 건축물 내 거주 및 시설의 유형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제설·제빙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의 완료 시기를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였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 관리 하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겨울철 구민의 안전 확보와 도로의 소통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등에 별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과 홍보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김재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9일

발의자 : 김재진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구체적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절기 재난 예방 업무의 효율성 및 성숙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설·제빙에 관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순위를 정함(안 제3조)
- 나.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을 정함(안 제5조~안 제6조)
- 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도구의 비치·관리 명시 및 자재나 도구의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9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7. 27. ~ 8. 4.)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
- 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
- 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쌓인 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고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 (제5조제2항 관련)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²)	적설량(cm)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cm)		비 고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cm)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서울은 0.5이하 지역에 해당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 ² 이상으로 한다.(KBC 2009)					